

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층수 (지상/지하)	주용도	비고
971,565	27,675,94	59.99	1,071.91	76.9	19/8	업무시설	

아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	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	
종류	관리청	규모 (㎡)	종류	관리청	규모 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		도로	서울특별시 중구청	112.2	(주) 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	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
			공원	서울특별시	244.3		시행자 부지제공 후 향후조성예정
계			계		356.5		

자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(☎ 3396-5772)에 비치

[별지 제21호서식]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

구분	토지연번	권리소재지	토지				건 축 물				소유권이외의 권리		비 고				
			지 목	면 적(㎡)		이용지역 또는 지구 이용 상 황	소 유 자		용도 / 구조	동수 / 층수	연면적 (㎡)	소 유 자		권리의 종류	권 리 자		
				공부상	편입		성 명	주 소				성 명			주 소	성 명	주 소
수용 / 사용	계			1,976.0	1,976.0												
	1	을지로3가 5-1	대지	100.5	100.5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2	을지로3가 5-2	대지	90.9	90.9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3	을지로3가 5-3	대지	33.1	33.1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4	을지로3가 5-4	대지	116.7	116.7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5	을지로3가 5-5	대지	175.2	175.2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6	을지로3가 5-18	대지	148.4	148.4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7	을지로3가 5-19	대지	136.5	136.5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8	을지로3가 5-21	대지	109.1	109.1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	9	을지로3가 5-22	대지	132.2	132.2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
10	을지로3가 5-23	대지	82.6	82.6		일반 상업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(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(주)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									

210mm×297mm〔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〕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8호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일반용 명단 : 61원 (A4용지 1매당)	USB 1개*8,000원	
라벨용 명단 : 286원 (라벨용지 1매당)		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99호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공고(안)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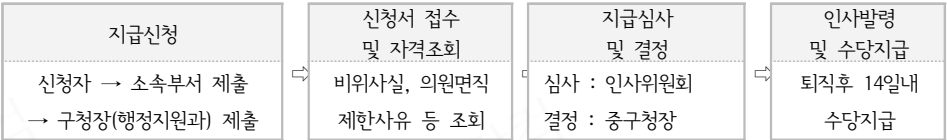
1. 신청대상 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)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

2.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

구 분	신 청 기 간	명예퇴직 예정일	비고
정기 명예퇴직	매월 10일까지	신청한 달의 말일	
수시 명예퇴직	희망일 20일 이전까지	명예퇴직 희망일	해당자에 한함

- ※ 정기명예퇴직의 경우 신청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일일을 종료일로 하며, 10일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익월에 심사함
- ※ 수시 신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
: 직제와 정원의 개편·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등

3. 신청절차



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, 명예퇴직원, 퇴직자 보안서약서, 명예퇴직자 협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
- 소속 부서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구청장(행정지원과)에 (공문 및 원본서류) 제출

4. 지급대상자 결정

- 서울특별시중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결정
-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

【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자】※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

- 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,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-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
- ④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-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
5. 수당지급

-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
- 지급액 산정기준 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[별표1] 참조)

정년 잔여기간	산 정 기 준
1년이상~ 5년이내	[호봉제] 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 [연봉제] 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
5년초과~ 10년이내	[호봉제] 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×[60 + (정년잔여월수-60)/2] [연봉제] 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×[60 + (정년잔여월수-60)/2]
10년초과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

※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 예정일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

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당을 환수함

【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】※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

-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② 경력직공무원, 특수경력직공무원(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 제외)으로 재임용되는 경우
-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

6. 특별승진 (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)

-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(인사위원회 결정)

【특별승진 제외 대상자】

-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있는 자
 - ②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
 - ③ 재직기간 중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※ 주요비위 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제2호

7. 제출서류

-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1부
-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
- 명예퇴직원 1부
-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
- 명예퇴직자 협약서 1부
- 공적조서(특별승진 심사용) 1부

8. 행정사항

- 소속부서장은 명예퇴직원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명예퇴직 제한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행정지원과에 통보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 참고

붙임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 각 1부. 끝.